

문서번호 : 15-01-사무-03
수 신 : 각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
제 목 : 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
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전송일자 : 2016. 3. 8.(화)
전송매수 : 총 2매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지난 2월 16일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기심의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위원회는 우선,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합의를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위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분명하고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 기술이 삭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중국, 북한, 필리핀, 동티모르 등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3. 나아가 위원회는 2015년 12월 한일정부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피해 생존자의 견해(views)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재단 설립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과 만족적인 조치(satisfaction), 공식적 사과 및 재할서비스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reparation)을 하라고 권

고하였으며,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고 **역사적 진실**을 학생과 일반대중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폄하하거나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 및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의 이행 성과를 차기 정기심사에 보고하라고 권고한 위원회의 태도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4.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을 감시하고 권고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기구로서 전세계 23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본 협약의 회원국은 자국의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받고 개선사항을 권고받게 된다. 일본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7차 및 8차 정기심의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16일 심의 당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라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5.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제 인권조약기구는 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만 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